

데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는 국가의 전체 공공사무에서 그 비율이 낮고 많은 부분 이 국가사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 계	최종조사시점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
단위사무수 : 15,774(100%)	1993.12	11,747(75%)	1,920(12%)	2,110(13%)
	1996.3	11,646(74%)	1,246(8%)	2,882(18%)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사무는 전체의 75%에서 74%로 1% 줄어든데 그치고 있으며, 지방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여 1% 더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기능의 성격에 따른 중앙과 지방사무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무중 기획기능에 관한 것은 28%이고 집행기능에 관한 것은 72%로 나타나, 지방사무의 경우 기획기능은 19%에 그치고 81%가 집행기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기획의 폭이 전체 평균보다 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기능성격	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
기 획	4,458(28%) (100%)	3,703(32%) 83%	351(18%) 8%	404(19%) 9%
집 행	11,316(72%) (100%)	8,041(68%) 71%	1,569(82%) 14%	1,706(81%) 15%
계	15,774(100%)	11,744(100%)	1,920(100%)	2,110(100%)

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중의 하나인 민방위분야의 경우 1995년도와 1996년도 예산중 국비는 30%를, 70%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1995년의 경우 무려 267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징수액의 40% 이상을, 지방양여금 재원의 4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불교부대상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방경찰에

업무협조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강원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한데 단체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찰사무집행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96년, 97년도에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사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의 간선제의 교육위원제도와 간선의 간선인 교육감 선출제도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교육을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나왔다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과내용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영삼정부가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5·18광주민중항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12·12를 우국충정의 군인이 애국심의 발로에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5·18광주사태라고 교과서에 기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